##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86

발의연월일: 2022. 11. 9.

발 의 자 : 남인순 · 강은미 · 김영배

박주민 • 신정훈 • 심상정

이동주 • 이용빈 • 정태호

허 영·홍성국 의원

(119]

##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많은 규제는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그 와중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 시판 실명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2022년 7월 21일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위헌·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제한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 (안 제58조제1항 및 제108조의3 삭제 등).
- 나.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현수막, 어깨띠, 모자나 옷, 그 밖의 소품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 59조제6호 신설).
- 다.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61 조제8항제2호라목 신설).
- 라.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 마.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90조 및 제93조 삭제).
- 바.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함(안 제91조제1항).
- 사.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완화함(안 제103조제3항).

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 1호·제6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선되거나"를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거나"로, "행위를"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로 하고, 같 은 항 제1호 중 "選擧에"를 "선거나 정책에"로 한다.

제58조의2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거일 전 90일부터 현수막·어깨띠·모자·옷·표찰·수기·마스코트나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을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소품을 배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

제68조제1항 중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 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을 "누 구든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2조의6 및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제1항 중 "확성장치를"을 "정격출력 30와트 이상의 확성장치를" 로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103조제3항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이와 유사한 집회나 모임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집회나"로 한다.

제108조의3을 삭제한다.

제230조제1항제1호 중 "投票를"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하여 투표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나타내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를 "나타내어"로 한다.

제255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및 거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61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68조를 위반하여 규격이나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 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58條(定義 등) ① 이 法에서	第58條(定義 등) ①
"選擧運動"이라 함은 <u>당선되거</u>	<u>특정</u> 후
<u>나</u>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보자를 당선되거나
하기 위한 <u>행위를</u> 말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해당하는 행위는 選擧運動으로	
보지 아니한다.	
1. 選擧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	1. <u>선거나 정책에</u>
진 및 의사표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	<u>&lt;삭 제&gt;</u>
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	

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저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신 설> <삭 제>

세59조(선거운동기간)	

- 1. ~ 5. (현행과 같음)
- 6. 선거일 전 90일부터 현수막· 어깨띠·모자·옷·표찰·수기·마 스코트나 그 밖의 소품을 붙 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 동을 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 을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소품 을 배부하는 방법은 제외한 다.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 제6 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 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 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 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 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 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 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 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 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u>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u> <u><삭 제></u>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

세68조(어깨띠	등	소품)	(1)	누구
<u>든지</u>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 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 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이 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 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 라 한다)가 제공하는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인터넷언론사가 「정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실명을 확인받도 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한 것 으로 본다.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② 정당이나 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 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 대의 정보등을 게시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 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정보등을 게시한 경우 당해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하여야 한다.
-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정보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 니된다.

-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 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 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 지·반대의 정보등이 게시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 여야 한다.
- ①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 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등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삭 제>

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 로 본다.

-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 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 위
-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 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 매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 다.
-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 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 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 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第91條(擴聲裝置와 自動車 등의

사용제한) ① 누구든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演說·對談·討論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u>확성장</u>치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 ④ (생 략)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 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 구든지 選擧日전 180日(補闕選 擧 등에 있어서는 그 選擧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選 擧日까지 選擧에 영향을 미치 게 하기 위하여 이 法의 規定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政黨(創 黨準備委員會와 政黨의 政綱・ 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 서 같다) 또는 候補者(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 하 이 條에서 같다)를 支持·추 천하거나 反對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거나 政黨의 명칭 또 는 候補者의 姓名을 나타내는 廣告, 人事狀, 壁報, 사진, 文

사용제한) ①
<u>정</u> 격출력
30와트 이상의 확성장치를
,
② ~ ④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書·圖畵, 印刷物이나 錄音·錄畵 데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 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 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 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 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② トマモス 選擧日前 90日早 日 選擧日か지는 政黨 또는 候 補者의 名義를 나타내는 著述・ 演藝·演劇·映畵·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 한 방법으로 廣告할 수 없으며, 候補者는 放送·新聞·雜誌 기타 의 廣告에 出演할 수 없다. 다

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選擧運動을 하도 록 勸誘·約束하기 위하여 選擧 區民에 대하여 身分證明書・文 書 기타 印刷物을 發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 ② (생 략)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④ • ⑤ (생 략) 제108조의3(정책·공약에 관한 비 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야유회 또는 이와 유사한 집회 나 모임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 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집회나---

④·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언론기관(제82조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및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등"이라 한다)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정책이나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그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 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 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 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행위
- 2.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 ③ 언론기관등이 후보자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 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 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 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 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 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 자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 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 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 的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 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 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 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
하여 투표를	

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 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다) 또는 참관인(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선장·입회인에게 金錢· 物品・車馬・饗應 ユ 밖에 財産 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 2. ~ 5. (생 략)
- 6.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 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다)의 성명을 <u>나타내거나 그</u>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_
2.	~	5. (3	- 같음)	
6.			 	
			 나타내	어

제공을 약속한 자 7. (생 략)

② ~ ⑧ (생 략)

-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 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 4. (생략)
  - 5.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어 깨띠의 규격을 말한다)을 위 반하여 어깨띠, 모자나 옷, 표 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 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 동을 한 사람
  - 6. ~ 20.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다.
  - 1. ~ 4. (생 략)
  - 5. 第93條(脫法方法에 의한 文書‧圖畵의 배부·게시 등 금지)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文書‧圖畵 등을 배부·첩부·살 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者, 같은 條第2項의 規定에

7.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 20.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 시

위반하여 廣告 또는 出演을 하거나 하게 한 者 또는 第3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身分證 明書·文書 기타 印刷物을 發 給·배부 또는 徵求하거나 하 게 한 者

- 6. ~ 8. (생략)
- ③ ~ ⑤ (생 략)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저 •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 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 에 處한다.
  - 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者

가. ~ 사. (생 략)

아. 第90條(施設物設置 등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하여 宣傳物을 設置·진열·게시· 배부하거나 하게 한 者 또 는 상징물을 제작·販賣하 거나 하게 한 者
 자. ~ 하. (생 략)

거. 제108조의3을 위반하여

6.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1
• ② (현행과 같음)	
③	
<u>.</u>	
1	
가. ~ 사. (현행과 같음)	
<삭 제>	

자. ~ 하. (현행과 같음) <u><삭 제></u>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한 자 또는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너. (생략)

- 2. ~ 4. (생략)
- ④·⑤ (생 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저

- ① ②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3의3. (생략)
- 4. 제8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5. (생략)

- ④・⑤ (생 략)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2. (생략)
- 3. 제8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l	킈. (	현행과 길	<u> </u>	
	2.	~ 4	. (현행과	· 같음)	
	4	• ⑤	(현행과	같음)	
1	261	조(3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1	• ②	(현행과	같음)	
	3				

----.

1. ~ 3의3. (현행과 같음) <u><삭 제></u>

4의2. • 5. (현행과 같음)

- ④·⑤ (현행과 같음)
- 1.·2. (현행과 같음) <<u>삭</u> 제>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문 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 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 자

- 4. (생략)
- ⑦ (생략)
-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 萬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 1의2. (생략)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 다. (생 략)

<신 설>

라. ~ 바. (생 략)

2의2. ~ 6. (생략)

⑨ ~ ⑫ (생 략)

4.	(현행과	같음)
т.	\ \ \ \ \ \ \ \ \ \ \ \ \ \ \ \ \ \ \ \	- $        -$

(7) (현행과 같음)

\_\_\_\_\_

1. • 1의2. (현행과 같음)

2.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68조를 위반하여 규격 이나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선거운동을 한 사람

<u>마.</u> ~ <u>사.</u> (현행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음)

2의2. ~ 6. (현행과 같음)

⑨ ~ ⑫ (현행과 같음)